

제주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63559 판결 [건물명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

담당변호사 최호웅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4. 2. 10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1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4. 1. 15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임대차보증금 1,500,000원, 월 차임 315,000원, 임대차기간 2024. 10. 9.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, 피고가 2024. 2. 10. 이후 차임을 연체한 사실, 원고가 2024. 3. 30.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, 차임 지급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마지막 차임 연체일인 2024. 2. 10.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1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임재남

별지